
토 론

토 론 내 용

사 회 :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자 :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

송경재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교수)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임철수 (한국신문협회 전략기획부장)

토 론 내 용

○ 송경재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교수)

최근 인터넷 미디어의 발전으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개념과 전문직으로서의 기자의 개념이 모호해지고 언론사의 위상과 영향력에 비견할 정도의 파급력을 갖고 있는 개인 매체들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간의 충돌이 기존과는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다양한 방식으로 뉴스가 매개·확산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봅니다. 다만,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몇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어 이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조정신청의 실효성 문제입니다. 카페, 블로그, SNS 등 온라인 공간의 기사와 기사에 달린 댓글을 피해자가 일일이 캡처(Capture)하거나 URL을 수집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해외사업자에 대한 조정·중재의 한계입니다. 만약 구글(Google)이나 페이스북(Facebook) 같은 해외사업자를 조정대상으로 포함하기 어렵다면, 자칫 국내사업자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검색 차단 기술적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구글의 경우, 특정 단어를 검색하면 검색시스템에 의해 모든 해당 단어가 포함된 게시물이 검색되는데, 그중 특정 기사만 검색을 차단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

먼저, 검색 차단은 검색 결과에서 특정 URL을 보이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으로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외사업자 문제는 언론중재법 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터넷 관련 우리나라의 모든 법이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해외사업자들을 보면, 명예훼손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사업자가 있는 반면, 연락이 되지 않는 사업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익을 올리는 해외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지성우 (사회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경재 교수님은 개정안대로 피해구제 절차를 따르더라도 개인 카페, 블로그, 댓글 등의 URL 수집이나 캡처를 개인이 일일이 하여 조정을 신청하기 어렵다는 점, 해외사업자의 조정 실효성 문제, 검색 차단 기술적 문제 등을 들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김경환 변호사님은 검색 차단은 특정 URL을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므로 기술적으로 조치 가능하고 해외사업자 문제는 모든 법이 갖고 있는 문제로 별도의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김경환 변호사님의 의견을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손해배상 등 기존의 피해구제방법이 선형적 미디어에 맞추어져 있는 바, 정보통신망을 통한 언론보도 피해에 대한 적절한 구제수단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내용 중 신설된 기사삭제청구권(개정안 제33조제1항), 기사갱신청구권(개정안 제33조제2항), 검색배제청구권(개정안 제33조의2), 이 세 가지 권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정안 제33조제1항은 대법원 2010다60950 판결을 모태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제33조제2항의 ‘사정변경에 따른 기사수정등청구권’은 제가 그간 ‘잊혀질 권리’의 대안으로 주장했던 ‘기사갱신청구권’을 입법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 제33조의2 ‘검색배제청구권’은 피해자가 검색사업자에게 일정한 사항을 검색결과에서 배제해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로서, ‘잊혀질 권리’에 관한 EU사법재판소의 마리오 곤잘레즈 판결과 유사합니다. 다만 곤잘레즈 판결은 피해자의 신청에 대하여 검색사업자가 스스로 심사·판단하는 구조임에 반하여 개정안 제33조의2는 피해자가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재판결과를 검색사업자에게 제시하여 검색결과에 반영하도록 한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개정안 제33조의2는 검색사업자가 스스로 심사를 하여야 한다는 EU사법재판소의 마리오 곤잘레즈 판결의 문제점을 대폭 개선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언론중재위원회 결정이나 법원 판결을 근거로 검색에서 배제해줄 것을 요청한 점에서 잊혀질 권리의 가장 큰 비판점인 언론의 자유 침해나 알권리 침해의 문제점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의 침해배제청구권 관련 조항 중 대법원 판결 내용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 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법원 판결과 달리 개정안에는 침해배제청구권의 요건으로 ‘중대성’만 적시되어 있고 ‘현저성’은 누락되어 있습니다. 물론 침해가 중대하면 현저할 가능성이 큼이지만 판결 취지에 따라 ‘현저성’도 언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대법원 판결에서는 언론사가 기사의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사를 삭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 제33조제1항을 보면 언론중재법 제5조제2항제2호(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준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기사 삭제를 할 수 없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어, 언론사 등이 항변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33조제1항제2호에는 ‘언론보도등의 내용이 사생활의 핵심영역을 침해함이 명백한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판례는 ‘현재 침해가 명백하고 현저한’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문구를 판례에 맞추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제33조제1항제3호의 ‘계속성’ 및 ‘중대성’은 판례에 근거가 없습니다. 침해배제청구권은 기사삭제까지 이루어지는 청구권이므로 시행령에 관련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개정안에 기사삭제를 포함한 침해배제청구권이 담긴 한, 이 법안이 시민의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는 의심을 차단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지난 2008년 이후 정부와 정치권이 지속적으로 인터넷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 규제를 시도해 왔는데, 언론중재법 개정안도 이 연장선상에 있다고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정부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인터넷신문 등록 시 요구하던 취재·편집 인력을 3명에서 5명으로 늘렸습시다만, 지난 10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인력이 1명이라고 하더라도 인터넷 신문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인터넷은 사상의 자유 시장에 가장 가깝게 접근한 매체’이며, 인터넷 매체 자체에서 잘못된 정보에 대한 반론과 토론, 교정이 이루어진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기타 건설적인 조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사삭제청구권이 담겨 있는 한 시민들의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기사삭제는 불가하다고 보습시다만, 기사의 수정·보완의 경우, ‘인터넷 반론권’의 개념을 도입한다면 수용 가능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문소영 (서울신문 사회2부장)

이 법안에서 법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대법원 2010다60950 판결은 일반적인 인격권 피해가 아니고 특정 사업자가 이중스파이로 활동했다는 내용의 보도로 인한 굉장히 중대하고 현저한 피해였기 때문에 기사삭제를 명한 것입니다. 이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 권오근 (언론중재위원회 운영본부장)

문소영 부장님의 의견에 대한 반론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말씀하신 것처럼 인격권 침해를 다루었고 해당 기사를 허위보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보도의 침해행위가 인터넷상에서 지속되고 있어 이를 제거하기 위해 과거 기사를 삭제하도록 한 것입니다. 즉, 기사삭제는 침해행위를 제거하는 해결방안의 일환으로 제시된 것입니다. 개정안 침해배제청구권의 취지 또한 ‘원본 기사의 삭제’가 아니라 ‘침해상태의 제거’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대법원 판결에는 언론사 데이터 베이스에서 기사 원본 삭제를 명하지 않았고 개정안 역시 언론사 DB의 원본 기사삭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서 문소영 부장님의 발제내용 중 2015년에 공개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일부 내용이 광상도 의원 발의안에는 반영되지 않은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발의안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크게 제2조제15호 언론보도의 정의에 논평을 추가했던 부분, 제5조제2항 위법성 조각사유 관련 조항을 삭제했던 부분입니다.

이 두 조문이 광상도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실무적으로 달라지는 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행 법에는 언론보도의 정의를 “언론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논평, 사설은 언론보도가 아닌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언론보도의 형식적인 범위를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고 그러한 언론보도 중 사실적 주장이 조정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에 의해서도 논평, 사설 등도 전제되는 사실이 있으면 조정대상이 됩니다. 기존에 이 부분을 개정하고자 했던 것은 언론보도의 정의를 좀 더 명확하게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위법성조각사유를 삭제하고자 한 이유는 각 청구권의 적용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손해배상은 위법성 조각사유가 적용이 되지만, 신설되는 침해배제 청구권은 위법성 조각사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격권의 구체적 유형별로 명문화가 필요했으나 입법 기술적으로 이 조항을 삭제하고 판례 법리에 맞춰 적용해도 되겠다는 판단 하에 개정을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제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앞서 언급한 대법원 판결은 기사삭제청구 인용에 현재성, 중대성, 현저성을 요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즉, 현재 중대하고 현저한 침해가 발생했을 때를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사삭제를 인용했다는 결과보다는, 언론사가 생산한 기사를 삭제할 때 위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기사가 진실하지 않다는 것을 피해자가 입증했을 때에 한해 기사삭제를 인용하였다는 점을 주목하여야 합니다.

기사삭제청구권 도입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만, 제33조제2항의 기사수정보완 청구권은 고려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인터넷 반론권’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인터넷 기사를 수정·보완하는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독자들의 정보의 충족 측면이나 기사내용을 바로잡는 측면에서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단, 대법원이 삭제의 조건으로 제시했던 현재성, 중대성, 현저성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임철수 (한국신문협회 전략기획부장)

법 개정안에 명확성과 적절성,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법조문이 명확하지 않은 점입니다. 법의 취지와 구체적인 조문의 내용이 다르고, 각 조문에 대한 여러 해석이 가능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사 DB의 원본기사 및 허위가 아닌 사실 보도는 삭제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는데 법조문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또 유사 뉴스서비스 전자간행물의 정의에 논평 등을 포함하고 있어, 언론중재법 상 언론보도의 정의와 상충합니다.

두 번째, 적절성 문제입니다. 언론사의 기사는 사실이든 오보이든 역사적 사실로서 남겨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보는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지만 삭제할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 검색만 차단하면 족할 것입니다.

또한 아시다시피 여러 언론사에서 내부적인 기준에 따라 자율적인 구제를 실시하

고 있는 바, 넓게 보면 행정기관인 언론중재위원회가 기사삭제와 논평에 대한 조정·중재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 지성우 (사회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자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먼저 김경환 변호사님은 침해배제청구권의 근거가 되는 대법원 판례와 개정안의 내용이 상이한 점이 있으므로 판결에 맞추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고, 이승선 교수님은 기사삭제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고, 정치적 의도가 담긴 것으로 오해받을 여지가 있으므로 타당하지 않으나 기사수정·보완 부분은 수용 가능하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권오근 본부장님은 대법원 판결의 방해배제청구권의 취지를 설명하시고 개정안이 언론사 DB의 원본 기사삭제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짚어 주셨고, 문소영 부장님, 이승선 교수님은 기사삭제는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철수 부장님은 법조문과 이에 대한 해설이 상이한 점, 언론사 데이터베이스 기사삭제는 과도한 조치인 점 등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토론자들은 제33조제2항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만, 제33조제1항 침해배제청구권에 관해서는 입장차가 커 의견을 좁히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제33조의3 댓글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대해 토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기사에 달린 댓글에 대한 조정·중재는 실무적으로 언론중재위원회가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댓글에 대한 피해구제는 정보통신망 법에 의하고 있는데, 임시조치가 매우 심각하다는 비판이 비등합니다. 댓글을 조정·중재대상에 포함시키면 댓글도 언론성을 띄게 되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이로 인한 피해를 구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만, 조정이나 법원 판결 등을 통해 구제가 확정된 기사에 달린 댓글에 한하여 댓글 게시판을 관리하는 언론사 등과 피해자 간의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 송경재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교수)

현재 온라인 공간의 댓글로 인한 피해가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승선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사가 허위이거나 위법적 내용을 담고 있고, 법원 판결이나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을 통해 구제가 확정되었을 때에는 댓글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제재에는 전제 조건이 반드시 붙어야 합니다. 원 기사가 현저하게 잘못된 경우에만 그 기사에 달린 댓글을 조정대상으로 삼도록 해야 하며, 댓글 자체만으로는 조정 신청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권오근 (언론중재위원회 운영본부장)

개정안에 의하면 기사에 달린 댓글만으로도 조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언론보도 피해자가 댓글의 피해자와 일치하는 경우가 많지만, 기사 댓글을 통해 또 다른 이해관계 당사자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기사 댓글의 삭제 등은 먼저 허위가 전제가 되어야 하고 중대성이 추가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어떤 내용을 진실과 허위로 양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간에 비교형량을 하게 되는데 이중 ‘중대성’은 표현의 자유에 비중을 두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명한 허위사실을 전제로 하여야만 댓글의 삭제 또는 수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문소영 (서울신문 사회2부장)

댓글에 대한 조치는 이미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실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인터

넷자율정책기구(KISO)에서 자체적으로 댓글이나 기타 유해한 콘텐츠에 대한 자율규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준사법기구가 댓글에 대해 조치하는 것보다는 민간 자율기구에 의해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에서는 게시판을 관리하는 언론사 등을 댓글로 인한 피해의 조정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사 입장에서는 일일이 기사댓글로 인한 피해를 처리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권오근 (언론중재위원회 운영본부장)

언론사에 댓글을 일일이 모니터링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언론중재법상의 조정은 피해자의 신청이 있어야 개시되며, 양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조정성립, 직권조정결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절차입니다.

○ 지성우 (사회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가 한 가지 첨언하자면, 현행 제도는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댓글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피해구제를 하도록 되어 있어 절차가 복잡하고 분산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개인은 피해구제를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개정안은 기사와 댓글 등 파생피해를 일괄 구제하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

제33조의3 기사에 달린 댓글에 대한 피해구제는 지금까지 관할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언론보도에 달린 댓글에 대한 조치를 피하는 경향이 있었고, 언론중재법에서는 댓글로 인한 피해의 구제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사 댓글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피해를 구제하는 것이 피해자 입장에서 편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절차에서는 댓글 작성자를 피신청인으로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댓글게시판을 운영하는 언론사 등을 피신청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절차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지성우 (사회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리해보면, 댓글에 대한 피해구제에 관해서는 대부분 토론자께서 필요성을 인정하셨습니다. 다만 문소영 부장은 언론사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권오근 본부장은 기사 댓글을 모두 모니터링 하자는 취지가 아니며, 언론중재위원회 절차는 조정절차이기 때문에 언론사에서 합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이승선 교수는 조정이나 법원 판결을 통해 구제가 확정된 기사에 달린 댓글에 한해 조정신청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김경환 변호사는 댓글작성자가 아닌 언론사 등을 피신청인으로 하는 부분은 절차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사 뉴스서비스 전자간행물에 대해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언론중재위원회가 유사 뉴스서비스 전자간행물로 인한 피해 구제를 고민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보가 온라인 공간에 남아있는 한, 피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개정안에 다소 문제되는 부분이 있어 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언론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의 제33조의6을 보면, 유사 뉴스서비스 전자간행물의 논평 및 여론까지도 조정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고민 필요해보입니다.

현재 공직선거법 상 인터넷언론사의 정의는 애매모호하고 지정범위가 광범위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의 개념에 사실에 입각한 보도는 물론이고 사설, 논평 등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을 손질하고 논평 등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인터넷망을 전담하는 상설 중재부를 두어 공직선거 관련한 피해구제 역시 이 ‘인터넷 중재부’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용상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논평과 관련하여, 형사와 달리 민사에서는 의견 표명도 과도하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 상당히 축적되어 있습니다.

○ 송경재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교수)

언론중재법은 형법, 민법, 정보통신망법, 공직선거법 등 여러 법과 관련이 있으므로 다른 법률과의 관계나 상충되는 부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부분인 ‘검색서비스’, ‘검색사업자’의 정의와 피해구제절차 등은 IT 관련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개정안의 검색서비스의 정의에 의할 경우, 심지어 학교 인터넷 게시판까지도 조정대상에 포함될 소지가 있으므로 정확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 문소영 (서울신문 사회2부장)

표현의 자유가 필요한 것은 진실을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명분이 훌륭하고 꼭 필요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악용될 소지가 많습니다. 언론피해를 기사삭제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았으면 합니다.

덧붙이자면, 언론사에서는 실무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과 상관없는 보도에 대해서는 비교적 쉽게 기사삭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계에 잡히지 않은 기사삭제 건수도 많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 권오근 (언론중재위원회 운영본부장)

언론피해구제의 핵심은 원상회복입니다. 그러나 한번 엇질러진 물은 주워 담기 어렵듯이, 온라인 공간에서의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온전한 회복은 매우 어렵습니다. 언론피해를 당한 신청인들이 가장 원하는 바는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는 정정보도와 그 보조수단으로써 기사삭제 및 검색 차단을 구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에서 검색 차단과 함께 기사삭제를 구제방안으로 삼은 이유는, 검색 차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사가 남아있으면 복제기사가 온라인 공간에서 계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서 임철수 부장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사실에 부합하는 보도도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법 개정안에는 성적 교섭과 같은 사생활의 핵심영역을 침해하는 보도에 한해서만 그 내용이 사실일지라도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보도는 반드시 기사삭제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침해가 지속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사례를 예로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 신문사에서 한 기혼남성이 여성 직장동료와 산책하는 모습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여 ‘꽃길 따라 사랑이...’라는 제목을 붙여 게재했습니다. 남성은 이를 본 가족과 주위 사람들의 각종 오해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조치가 필요하겠습니까? 이러한 보도는 응당 삭제하여 피해의 확산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 임철수 (한국신문협회 전략기획부장)

권오근 본부장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도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의 인격권 침해를 방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개정안의 일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법문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인 관련 보도는 조정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지성우 (사회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명분과 필요성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만 언론의 자유와 상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토론회를 비롯하여, 지속적으로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법안에 반영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언론중재법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